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7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문진석・김 윤・박홍배

정성호 · 이정문 · 강훈식

김교흥 • 박용갑 • 김문수

이재관 · 정준호 · 윤종군

박정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,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 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.

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 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(BMS)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,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,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국민의 안전확보 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4 신설 등).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4(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장착 등) ①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치(이하 "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"라 한다)를 장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통보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1. 자동차 소유자
- 2. 소방청장
-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구동축전지 안전 관리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장착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(판매위탁을

받은 자는 제외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구동축전지 관리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4의 개정
규정은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를 제
작·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9조의4(구동축전지 안전관리 장치의 장착 등) ① 자동차제 작·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치(이하 "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"라한다)를 장착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통보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1. 자동차 소유자 2. 소방청장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구동축전지안전관리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안전관리장치의 장착 기준 및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19. (생 략)

	통보_	절차 -	등에	필요한	사항은	
	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					
제	79조(1	벌칙)				
	1. ~	4. (현	행과	같음)		
	<u> 4의2.</u>	제293	<u> </u>	네1항을	위반한	
	<u> 가동</u>	차제즈	낙 • 판	매자등	(판매위	
	<u>탁을</u>	받은	자는	제외힌	:다)	
	5. ~	19. (ই	현행과	같음)		